

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폐지 고시

「공항시설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제목 :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폐지

2. 주요 변경 및 폐지 사항

가. 공항개발 예정지역 변경

당 초	변경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범위와 규모 ○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및 백산면 일원 (부지 1,573,495㎡)	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범위와 규모 ○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및 백산면 일원 (부지 1,560,171㎡)

※ 사유 : 김제시에서 추진한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에 김제공항 예정부지 일부 매각 사항 반영(서울지방항공청 실시계획 변경 고시 제2020-48호, '20.5.22.)

나.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372호, '22.6.30.)에 따라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일체를 폐지

※ 위 '가'목의 공항개발 예정지역 변경사항을 포함